

의안 번호	4
----------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8. 26.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호
- 다. 제출일자 : 2022. 08. 17.
- 라. 회부일자 : 2022. 08. 18.

2.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기존에 운영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 재위탁 대상 : 가람어린이집 외 9개소
- 변경위탁 대상 : 해피래미안 어린이집

나. 위탁체 선정 :

- 재위탁 대상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 변경위탁 대상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다. 위탁사업의 범위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¹⁾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위탁용어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수탁자도 공개 경쟁 참여 가능)

※2022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 기존 어린이집 중 가람어린이집 외 9개소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11일과 2023년 2월 28일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
- 재위탁을 포기한²⁾ 해피래미안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위탁 하려는 것이며, 협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구는 총 88개소가 운영 중이며, 구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재위탁 및 변경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시설명	면적	정원 (현원)	교직원	위탁체	인가일	위탁기간	비고
1	가람	448m ²	80명 (69명)	15명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한성열)	2013.01. 10.	2017.10.12. ~ 2022.10.11.	민관협력 무상사용 협약(20년)
2	꿈의숲	126m ²	24명 (23명)	9명	개인(김정남)	2018.03.01.	2018.03.01. ~ 2023.02.28.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10년)
3	돈암 하늘채	260m ²	50명 (41명)	12명	개인(함은희)	2018.03.01.		
4	래미안숲	112m ²	26명 (26명)	10명	개인(최승실)	2018.03.01.		
5	삼선예일	109m ²	24명 (22명)	8명	개인(이선주)	2018.03.01.		
6	안암래미안	160m ²	30명 (23명)	9명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김영태)	2018.03.01.		
7	현 대	109m ²	24명 (24명)	8명	개인(한순희)	2018.03.01.		
8	휴먼빌	151m ²	35명 (33명)	9명	개인(유연지)	2018.03.01.		
9	휴먼빌 키즈	100m ²	20명 (20명)	8명	개인(이정오)	2016.03.01.		매입 (2017.8.)
10	SK키즈 몬테소리	97m ²	21명 (21명)	9명	개인(김영)	2018.03.01.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10년)

2)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 도래로 재위탁 포기함

〈변경위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시설명	면적	정원 (현원)	교직원	위탁체	인가일	위탁기간	비고
1	해피래미안	129m ²	30명 (30명)	11명	개인(안재열)	2018.03.01.	2018.03.01. ~ 2023.02.28.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10년)

□ 민간위탁 및 재위탁 등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3)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이하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1항4)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5)에서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변경위탁 반드시 공개 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및 변경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3)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5)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⁶⁾,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표 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